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·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**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**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시 청약자격의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5만원)을 납입하신 후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|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| *(관련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 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)

|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|

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/ 우체국 /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|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개정사항 | ('21.1.1부터 적용)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: 무납부(과소납부)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: 무납부(과소납부)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: 무납부(과소납부) 세액의 300%
- ※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, 등기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납부기한은 [분양계약 체결일]입니다.

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

온라인 구매방법(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구매도 가능)

1 | 해당 홈페이지 접속 :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「전자수입인지」 검색

2 |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4 |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: 1.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: 150,000원
- ④ 건수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3 |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5 |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

